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학술지 규정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투고	규정	-----	1
원고	작성 지침	-----	3
심사	규정	-----	9
연구 윤리	규정	-----	12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투고 규정

2007. 05 개정	2018. 02 개정
2010. 04 개정	2018. 05 개정
2011. 05 개정	2019. 05 개정
2012. 02 개정	2020. 02 개정
2013. 07 개정	2021. 01 개정
2015. 05 개정	2021. 03 개정
2016. 01 개정	

[정신건강과 사회복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로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본 학회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실천적, 정책적 지식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행한다.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편집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투고할 수 없다).
2.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은 APA 매뉴얼의 기준에 따르며 표절과 중복투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3. 학회지의 발간은 연 4회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진행한다.

<표 1> 학회지 발간 일정

각 권 호수	원고접수 마감일	긴급투고 원고접수 마감일	발간일
1호	1월 20일	2월 28일	3월 31일
2호	4월 20일	5월 31일	6월 30일
3호	7월 20일	8월 31일	9월 30일
4호	10월 20일	11월 30일	12월 31일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되, 원고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까지를 해당 호수 투고원고로 본다. 단,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한 달 전까지 원고의 투고가 가능하며, 각 호마다 선착순 5편으로 마감한다. 각 호당 게재 확정 논문의 수가 15편을 초과한 경우 투고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한다.
5. 본 학회지 '원고작성 지침'에 맞게 작성된 원고만을 접수받으며, 투고된 원고의 심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투고자는 '투고원고', '투고신청서 및 자가점검사항', 'IRB 승인서류 사본' 혹은 '생명윤리심의 면제사유서'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kamhsw.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이때 성명과 소속, IRB승인번호는 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고 원고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투고원고에 대한 KCI 유사도 검사 결과(10% 이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담긴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7. 타 학술지나 간행물로 발간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하며 주저자는 반드시 학위수여자 본인이어야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혹은 활용한 경우, 투고 시 연구보고서의 활용 여부를 논문 투고신청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회에서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해당 연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8.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투고는 무효로 하며 해당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고를 무효로 하고, 해당 저자는 이후 8개 호(혹은 2년)에 한해 투고할 수 없다.
9. 투고된 원고의 최종 심사결과로 '게재불가' 판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유서의 제출을 통해 해당 논문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사유에 대해 심의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심사의 절차는 일반 논문의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10.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최종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제출한다.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작권이양동의서'의 제출을 통해 본 학회에 귀속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투고행위가 해당 논문의 저작권을 학회로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11. 일반심사료는 12만원, 긴급심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심사료는 원고 투고 시 편집위원회의 계좌로 입금한다. 심사를 통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불복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초기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료를 재납부하여야 한다.
12.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35만원, 개인 연구는 20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저자가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최종논문은 게재료를 면제한다. 최종논문의 분량이 25매(질적연구의 경우 3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2만 원의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3.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에서는 법률 제11690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 2. 2 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2017년(제45권 1호, 3월 31일 발행)부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에 투고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승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2차 자료)나 문서 등을 활용한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경우에는 '생명윤리심의 면제사유서'의 제출을 통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원고작성 지침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 이름 등은 첫 번째에만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 1) 논문제목
 - 2) 성명(소속은 각주 처리)
 -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 4) 중심단어(6개 이내)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 8) key words(영문, 6단어 이내)
 - 9) 부록(필요한 경우)
 -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의 최종본에 기술한다.
 -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3), 4)와 7), 8)의 순서를 바꾼다.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4.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1) 한글 소프트웨어: 한글 2002 이상(.hwp)
 - 2) 투고 원고의 분량은 **20~25매 내외**로 하며,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질적연구의 경우 30매).
 - 3) 편집용지
 - (1) 용지종류 : 사용자정의, 폭: 188 길이: 257
 - (2) 용지여백 : 위쪽: 22, 아래쪽: 22, 머리말: 12, 꼬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 4) 글자 및 문단 모양(<표 2> 참조)

<표 2> 글자 및 문단모양

형식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자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들여쓰기 (+)내어쓰기	줄간격	기타 (기준: 양쪽 정렬)
1. 본문	11	95	-5	(신명) 신명조			10	180	
2. 논문 제목	18	80	0	(신명) 태고딕				165	가운데정렬
3. 논문 부제목	12	95	-5	(신명) 태명조				180	가운데정렬
4. 성명	10	95	-5	(신명) 중고딕				180	가운데정렬
5. 1 제목	13	95	-5	(신명) 태명조				180	

6. 1) 제목	11	95	-5	(신명)	중고덕			180		
7. (1) 제목	10	95	-5	(신명)	태고덕		10	180		
8. ① 제목	10	95	-5	(신명)	태명조		10	180		
9. 가 제목	10	95	-5	(신명)	중고덕		10	180		
10. 각주	9	95	-5	(신명)	신명조			150		
11. 표제목	10	95	-5	(신명)	중고덕			180		
12. 표내용	9	95	-5	(신명)	신명조			130		
13. 표주	8	95	-5	(신명)	중고덕			130		
14. 국문초록	9	95	-5	(신명)	중고덕	20	20	180		
15. 중심단어	9	95	-5	(신명)	태고덕	20	20	180		
16. 인용문	10	95	-5	(신명)	신명조	20		160		
17. 제목	15	95	-5	(신명)	태명조			160	가운데정렬	
18. 부제목	12	95	-5	(신명)	신명조			160	가운데정렬	
영문 초록	19. 성명	12	95	-5	(신명)	신명조		160	가운데정렬	
	20. 소속	9	95	-5	(신명)	신명조		160	성명 각주	
	21. 본문	11	95	-5	(신명)	신명조		160		
	22. key words	10	95	-5	(신명)	태고덕		(+)60	160	
23. 참고문헌	10	95	-5	(신명)	신명조			(+)30	160	8항 참조

※ 본 학회 홈페이지 및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논문 작성 규정을 반영한 '편집스타일'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5. 연구비 지원, 학위논문/연구보고서의 축약 및 활용, 학술대회 발표 등 논문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아래 참조).

-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 이 논문은 .○○년도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6.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논문의 첫 장에 성명의 각주로 명시한다(게재 확정 후 기술).

김복지·홍길동·최사회*
(중간생략)

* 김복지: ○○대학교, 제1저자
홍길동: ○○대학교, 교신저자
최사회: ○○대학교, 공동저자

8. 주석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1) 주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연구 윤리 규정의 APA 기준 인용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예시 1),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시 2).

예시 1) 김OO(2010: 52)는...

예시 2) ...다(김OO, 2010: 52)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시 1) Adams(2003: 17-23)는...

예시 2) ...다(Adams, 2003: 17-23).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시 1) 김복지와 홍길동(2008: 332-355)은... ,

예시 2) Dooley와 Prause(2002: 787-813)는...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등(et al.)"을 사용한다. 단,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를 밝힌다.

예시 1) 본문: 김복지 등(2004: 124)은... , ... (김복지 등, 2004: 124).

⇒ 참고문헌: 김복지·홍길동·최사회, 2004,...

예시 2) 본문: Parker 등(1999:627-636)은..., ...(Parker et al., 1999: 627-636).

⇒ 참고문헌: Parker, G., Chen, H., Kua, J., and Loh, J., 1999,...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영문은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시 1) (김OO, 2009: 415; 장OO, 2008: 155; 최OO, 2008: 257-294)

예시 2) (Kurumatani, 2004: 402-409; Parker et al., 1999:627-636; Quigley et al., 2001: 235-244; Tsiantis et al., 2004:221-234)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2) 참고문헌 작성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주석과 참고문헌의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연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2) 학위 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5) 영문으로 된 서적이거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① 단독 저서의 예

- 김OO (2020).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서울: OO출판사.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② 2인 공저의 예

- 권진숙 · 박지영 (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Arbuckle, J. and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IL: Small Waters Corporation.

③ 3인 이상의 공저의 예

- 양옥경 · 김정진 · 서미경 · 김미옥 · 김소희 (2011). **사회복지실천론**. 경기: 나남.
- Glass, G. V., McGaw, B. and Smith, M. L.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2) 번역서: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소재지: 발행처.

- Payne, M. (1997). *Modern Social Work Theory*, 서진환·이선혜·정수경 역, **현대사회복지실천이론**, 서울: 나남출판.

(3) 편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해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 Lantz, J. (1996). 'Cognitive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94-115, in **Social Work Treatment**. edited by Turner, F. J., New York: The Free Press.

(4)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DOI

① 1인 저자의 예

- 김희철 (2020). 대학생의 우울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정보이해능력의 매개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2), 5-32. DOI : 10.24301/MHSW.2020.06.48.2.5
- Rogers, R. T. (2020). Predicting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illness impact for individuals with

schizophrenia using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starting point for future research. *Personalized Medicine in Psychiatry*, 19-20, 100053. DOI: <https://doi.org/10.1016/j.pmip.2019.11.001>.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 이성규 · 성혜연 · 서청희 · 박예진 (2020). 정신건강 원조전문가의 외상후 성장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2), 63-91. DOI : 10.24301/MHSW.2020.06.48.2.63
- Harris, M. T. and Rempfer, M. V. (2020). Profiles of self-evaluation as a metacognitive skill: An indicator of rehabilitation potential among people with schizophrenia.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43(4), 308-317. DOI : <https://doi.org/10.1037/prj0000412>
- Luther, L., Fischer, M. W., Firmin, R. and Salyers, M. P. (2019). Clarifying the overlap between motivation and negative symptom measures in schizophrenia research: A meta-analysis. *Schizophrenia Research*, 206, 27-36. DOI : <https://doi.org/10.1016/j.schres.2018.10.010>.

③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 이명화 (2020). 정신장애인의 국제법적 보호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신문기사 등 인터넷 문서: 출처 (발행연도). 제목. 사이트주소

- 중앙일보 (2020). 우울증 환자 10년 새 2배 증가...극단적 선택 위험 4배 높아.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774
- 통계청 (2021). 가구소득 정의. http://kostat.go.kr/incomeNcpi/income/income_cp/1/index.static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심사 규정

2007. 03 개정
2009. 01 개정
2009. 07 개정
2011. 05 개정
2012. 02 개정
2019. 05 개정
2021. 02 개정
2021. 03 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3.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연구의 독창성, 최근 연구동향의 반영도,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종합의견" 등의 내용을 기초로 심사하며, 수정을 요구할 때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서 수정요구사항에 작성하여 제시한다.
5. 제출된 논문은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 3-1> 참조).

<표 3-1>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6.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심사 당시의 논문 그 상태로 게재하되 미미한 자구수정 등의 수정은 허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7.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원고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다.
8.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 발간 일정을 고려하여 수정원고를 접수한다.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원고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재심을 의뢰하며, 심사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지면 게재를 통보한다. 단, 투고자가 수정한 원고를 제시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의 투고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수정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규 논문의 투고 절차를 준용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9.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알린다. 단, 게재 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투고자는 1회에 한하여 판정 불승복 사유서를 첨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3명의 심사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10.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분과에 연락하여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정을 허락하도록 한다.
11.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 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12.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한다.
13. 영문 논문에 대한 심사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14.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15. 선정된 논문은 투고논문이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6.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연구 윤리 규정

2007. 03 개정
2009. 07 개정
2011. 05 개정
2012. 02 개정

투고자는 다음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관한 기준(APA Publication Manual 7th ed.)에 따라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앞의 투고자격 및 논문심사원칙에서 명시한 처벌을 받게 된다.

1. 표절

타인의 용어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1) 직접인용

타인의 논문은 물론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쓸 때는 반드시 인용 페이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1) 40단어 미만으로 인용할 때: 반드시 큰따옴표(" ")를 사용하여 인용한다.

예시 1) 그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Milele,1993: 276)라고 하였다.

예시 2) Milele(1993)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276)라고 하였다.

(2) 40단어 이상으로 인용할 때: 큰따옴표(" ")를 쓰지 않고 인용내용 전체를 블록인용(block quotation) 하되, 본문과 인용문의 사이를 한 줄 띄운 다음 인용문의 왼쪽 여백을 20pt 처리하여 본문과 구분한다. 이때 인용 페이지를 괄호 속에 밝혀야 한다.

예시) Milele(1993)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약효과'는 이러한 접근 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약물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276).

2) 간접인용

다른 저자의 말을 요약, 또는 문장이나 용어의 순서를 바꾸어 인용할 때도(paraphrase)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저자 자신의 기 출판된 연구의 내용을 간접인용할 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2. 중복게재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2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혹은 다른 저널에 이미 출판되었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때는 투고 시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중 또는 출판과정에서 중복게재와 관련된 투고규정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저자가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투고가 무효화되며, 출판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하나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여 복수의 연구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분명하고 타당하게 구별되는 이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새로운 이론적 시각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이미 출판된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나 학제 간 연구의 경우 필요하다면 복수의 논문 게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구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저자는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투고자들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위한 제반 진행 과정에서 윤리의식 제고와 관련 활동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은 학회장으로 하며, 윤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의 활동은 1) 연구윤리규정의 제·개정과 관련된 업무, 2) 회원 및 투고자들의 윤리교육 및 윤리적 활동에 관련된 업무, 3) 연구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보고 등에 관련된 업무, 4) 기타 관련 업무로 한다.